

9-1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

1971. 9. 1. 제정

2025. 9. 9. 개정

주무부서 : 학생처 학생지원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중앙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장학금 지급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교내장학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 1.>

제2장 학사과정 장학금

제2조(장학금의 종류) 본 대학교 학사과정에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12. 2. 1., 2025. 2. 18.>

1. 성적우수장학금
2. 우수중앙인장학금
3. 입학성적우수장학금
4. 중앙사랑장학금
5. 복지장학금 <신설 2023. 12. 1.>
6. 중앙나래장학금
7. 보훈장학금
8. 직계장학금
9. 부속기관장학금
10. 교환학생, 복수학위생 및 인턴십장학금
11. 외국인장학금
12. 우수선수장학금
13. 국가시험지원장학금 <개정 2014. 12. 1.>
14. 봉사장학금
15. 가족장학금
16. 근로장학금
17. 예·체능특기장학금
18. 기금장학금
19. 특성화장학금 <개정 2017. 1. 3.>
20. 릴레이장학금

제3조(성적우수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의 세부 명칭, 선발기준, 지급액은 다음 각 항과 같다. 단, 천재지변 또는 사회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장학금 관련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20. 10. 7.>

① 장학금 세부명칭 및 지급액 <개정 2021. 8. 9., 2025. 2. 18.>

세부 명칭	지급액
학부(과, 전공)수석	수업료 100%
학년수석	수업료 65%
학년우수	수업료 35%

② 학년우수일 경우 학년별 재학 인원 10%이내의 성적 상위자를 대상으로 소속 대학 학장이 선정한다. <신설 2017. 1. 3.>

③ 성적우수장학금 대상자가 수혜를 포기할 경우 차순위를 선정하지 않는다. <신설 2017. 1. 3.>

④ 장학금 수혜 제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 2. 1., 2016. 1. 1., 2025. 2. 18.>

1. 직전학기 신청학점수가 16학점 미만인 자. 단, 수업연한 종료학기의 경우 직전학기 신청학점수가 13학점 미만인 자 <개정 2023. 7. 26.>

2. 직전학기 미 취득학점(F)이 있는 자 <개정 2023. 7. 26.>

3. 직전학기 상대평가 대상자가 아닌 자 <개정 2023. 7. 26.>

4. 직전학기 평균평점 4.0 미만인 자

⑤ 평균평점이 동일한 경우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직전학기 신청학점수가 많은 자를 우선함 <개정 2023. 7. 26.>

2. 직전학기 신청과목수가 많은 자를 우선함 <개정 2023. 7. 26.>

3. 직전학기 전공학점수가 많은 자를 우선함 <개정 2023. 7. 26.>

4. 그 외 세부사항은 소속대학 학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전문 개정 2017. 1. 3.>

제3조의2(우수중앙인장학금) ① 신입학 후 연속 2개 학기 동안 일정 기준 이상 우수한 학업 성적을 취득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 기준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은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2. 18.]

제4조(입학성적우수장학금) 입학성적이 본 대학교가 정한 일정기준 이상인 자로 장학금 지급기준과 지급기한 등은 해당 연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로 정한다. 다만, 교환학생 및 산학협동인턴십의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개정 2012. 2. 1., 2012. 9. 1., 2013. 11. 1., 2017. 1. 3., 2019. 5. 8., 2025. 2. 18.>

1. 국내에서 학점을 취득한 자는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로 정한 학점과 성적요건이 부

합할 경우 지급한다. <신설 2017. 1. 3.>

2. 해외에서 학점을 취득한 자는 신청과목 중 낙제 과목이 없을 경우 신입생 모집요강에서 따로 정한 학점과 성적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한다. <신설 2017. 1. 3.>

3. 산학협동인턴십 12학점 이상 이수자의 경우 신입생 모집요강에서 따로 정한 학점과 성적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한다. <신설 2019. 5. 8.>

제5조(중앙사랑장학금)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2. 2. 1.>

1.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매학기 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하는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선발) <개정 2014. 12. 1.>
2. 장애자로서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
3. 사회봉사 실적이 우수한 자 <개정 2014. 12. 1.>
4. 기타 총장 또는 장학업무 주관부서의 장이 추천 하는 자로 학교의 명예를 높이고 발전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자 <개정 2012. 2. 1., 2014. 12. 1.>

② 지급 기준 및 금액은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2. 1.>

③ <삭제 2017. 1. 3.>

제5조의2(복지장학금) ① 갑작스러운 가계 곤란 상황 발생 등 특별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금 신청 시 해당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급 기준 및 금액은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주관부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3. 12. 1.>

제5조의3(중앙나래장학금) 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생활비성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외부장학재단(한국장학재단 제외)의 수업료성 장학금 지원을 받는 자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2. 국가장학금의 지원을 받는 자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 신청 시 증빙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급 기준 및 금액은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2. 18.]

제6조(보훈장학금)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 및 직계 손·자녀에게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북한이탈주민 교육보호대상자 포함). <개정 2012. 2. 1.>

1. 제출서류

- 가. 대학수업료면제대상자 증명서(손·자녀)
- 나.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본인)
- 다.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북한이탈주민)

<본조 전문 개정 2017. 1. 3.>

제7조(직계장학금)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 1. 본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정년트랙 및 별정제 교원), 직원(일반사무직, 기능직), 법인 임직원의 본인 및 직계자녀
- 2. 본 대학교 또는 법인에 재직 중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전임교원(정년트랙 및 별정제 교원), 직원(일반사무직, 기능직), 법인 임직원의 직계자녀 <개정 2021. 1. 21.>
- 3. 본 대학교 또는 법인에 15년 이상 근무하고 순직·공상으로 퇴직한 전임교원(정년트랙 및 별정제 교원), 직원(일반사무직, 기능직), 법인 임직원의 직계자녀 <개정 2021. 1. 21.>
- 4. <삭제 2021. 1. 21.>

② 지급액 등 세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성적기준 : 직전학기 평점 2.50 이상 <개정 2023. 12. 1.>
- 2. 지급액 : 수업료 전액 <개정 2023. 1. 2.>
- 3. 지급기한 : 수업연한까지
- 4. 제출서류 <개정 2012. 2. 1.>
 - 가. 보호자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재직확인)
 - 나. 가족관계증명서

<본조 전문 개정 2017. 1. 3., 2020. 7. 24.>

제8조 <삭제 2021. 1. 21., 2023. 7. 26.>

제9조(부속기관장학금)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산하기관(중앙대학교 제외)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의 직계자녀 중 1인에 한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2. 2. 1.>

- 1. 성적기준 : 직전학기 평점 2.50이상
- 2. 지급액 : 수업료의 50% <개정 2023. 1. 2.>
- 3. 지급기한 : 보호자 재직 시에 한함. <신설 2012. 2. 1.>
- 4. 제출서류 <개정 2012. 2. 1.>
 - 가. 보호자 재직증명서
 - 나. 가족관계증명서

<본조 전문 개정 2017. 1. 3.>

제10조(교환학생, 복수학위생 및 인턴십장학금) 장학금의 선발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항

과 같다. <개정 2012. 2. 1., 2019. 11. 25.>

① 본 대학교 국제교류 및 인턴십 관련 규정에 의거 교환학생 또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② 본 대학교의 외국대학교와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복수학위 프로그램에 선발된 복수학위생에게는 외국대학교에서 수학하는 기간 동안 수업료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단, 별도의 협약에 의거하여 등록금이 상호 면제된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1. 25.>

③ 본 대학교의 외국대학교와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복수학위 프로그램에 선발된 초청 복수학위생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단, 천재지변 또는 사회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장학금 관련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5., 개정 2020. 10. 7., 2025. 2. 18.>

1. 본교가 정한 기간 내 IBT TOEFL 90이상 또는 IELTS(Academic) 6.5 이상 제출한 학생에게 입학 학기에 한하여 수업료의 50% 금액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2. 입학 후 다음 학기부터 수업연한까지는 직전학기 성적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직전학기 16학점 (수업연한 종료학기의 경우 직전학기 13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미 취득학점(F)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0. 10. 7., 2023. 7. 26.>

- 가. 성적 4.3이상인 자는 수업료 전액
- 나. 성적 4.0이상인 자는 수업료의 50%
- 다. 성적 3.7이상인 자는 수업료의 30%
- 라. 성적 3.2이상인 자는 수업료의 20%

3. 외국국적을 상실한 경우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4. 별도의 협약에 의거하여 본교에서 수학을 허가받은 초청 복수학위생은 협약에 명시한 장학금만을 지급하며 위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5. 본 시행세칙 제3조의 성적우수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산학협동인턴십으로 학기를 이수한 경우 평점이 산출된 최근 학기 성적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11조 <삭제 2010. 3. 1.>

제12조(외국인장학금) ① 신(편)입학 순수외국인 특별전형(부모 모두가 외국인)으로 입학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단, 천재지변 또는 사회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장학금 관련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8. 2. 26., 2020. 10. 7., 2025. 2. 18.>

1. 본교 언어교육원 4급 과정을 수료한 학생에게 수업료의 30%, 5급 과정 이상을 수료한 학생에게 50%, 타 대학(교육국제화 역량 인증대학) 언어교육원 5급 과정 이상을 수료한 학생에게 수업료의 30%를 입학 학기에 한하여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의학부 입학생은 제외한다. <개정 2012. 9. 1., 2014. 9. 1., 2018. 2. 26., 전문개정 2020. 10.

7., 개정 2021. 9. 16., 2023. 12. 1.>

2. 본교가 정한 기간 내 TOPIK(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6급 이상을 제출한 자에게 수업료 전액, 5급 이상을 제출한 자에게 수업료의 50% 금액을 입학학기에 한하여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의학부 입학생은 제외한다. <개정 2012. 2. 1., 2012. 9. 1., 2014. 9. 1., 2018. 2. 26., 2020. 10. 7.>

3. <삭제 2020. 10. 7.>

4. 입학 후 다음 학기부터 수업연한까지는 직전학기 성적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직전학기 16학점 (수업연한 종료학기의 경우 직전학기 13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미 취득학점(F)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2. 2. 1., 2017. 6. 21., 2018. 2. 26., 2020. 10. 7., 2023. 7. 26.>

가. 성적 4.3 이상인 자는 수업료 전액

나. 성적 4.0 이상인 자는 수업료의 50%

다. 성적 3.7 이상인 자는 수업료의 30%

라. 성적 3.2 이상인 자는 수업료의 20%

② 외국국적을 상실한 경우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별도의 협약에 의거하여 입학한 외국인은 협약에 명시한 장학금과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

④ 본 시행세칙 제3조의 성적우수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2. 1.>

⑤ 교환학생 및 산학협동인턴십으로 학기를 이수한 경우 평점이 산출된 최근 학기 성적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9. 5. 8.>

제13조(우수선수장학금) 체육특기자로 입학하여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자에게 장학금 지급액 및 대상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2012. 12. 1.>

① 단체종목

1. 종목 : 축구, 야구, 농구 우수선수 <개정 2012. 2. 1.>

2. 지급액 :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개정 2023. 1. 2.>

3. 지급기한 : 수업연한 동안 선수활동중인 자

② 개인종목

1. 종목 : 올림픽 개인종목 <개정 2012. 2. 1., 2012. 12. 1.>

2. 지급액 :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개정 2023. 1. 2.>

3. 지급기준 : 해당학기 국가대표 선수(기간은 6개월 단위로 함)

<본조 전문 개정 2017. 1. 3.>

제14조(국가시험지원장학금) ① 재학 중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다음 각호와 같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 2. 1., 2014. 12. 1., 2016. 1. 1., 2025. 2. 18.>

1. 지급대상 국가시험 :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입법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신설 2014. 12. 1., 개정 2017. 1. 3., 2023. 7. 26.>

2. 성적기준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수업연한 종료학기인 경우 직전학기 8학점) 이상, 평점 1.88이상 <신설 2014. 12. 1.>

3. 지급액

가. 1차 시험 합격자 : 한 학기 수업료 전액(2회에 한함) 다만, 의·약학대학 재학생은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입법고시 1차 시험 합격만으로 장학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2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한해 1개 학기 수업료 전액을 2차 시험 합격자 장학금과 별도로 지급한다.(1회에 한하여,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지급 가능하다..) <개정 2012. 2. 1., 2014. 12. 1., 2016. 1. 1., 2017. 1. 3., 2017. 6. 21., 2019. 5. 8.>

나. 2차 시험 합격자 : 수업연한까지 수업료 전액 <개정 2014. 12. 1.>

4. 신청기간 : 해당 부서장이 따로 공지하며, 재학생은 합격한 학기, 휴학생은 복학하는 학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단, 합격자 발표일이 학기 수업일 1/2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학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1.>

5. 제출서류

가. 합격확인서 <신설 2014. 12. 1.>

나. 고시반 지도교수 확인서(1차 합격생) <신설 2016. 1. 1., 개정 2017. 1. 3.>

다. <신설 2017. 1. 3., 삭제 2019. 5. 8.>

② 기타 상기에 준하는 자격고시 또는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학교 명예를 선양한 자는 소속대학 학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2014. 12. 1.>

제15조 <삭제 2010. 3. 1.>

제16조(봉사장학금) 학생활동에 공로가 있고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 2. 1., 2017. 1. 3., 2023. 7. 26., 2025. 2. 18.>

1. 성적기준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수업연한 종료학기인 경우 직전학기 8학점) 이상, 평점 1.88이상

2. 지급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신설 2017. 1. 3., 개정 2017. 6. 21., 2018. 12. 21., 2021. 9. 16., 2023. 7. 26.>

3. 당해학기 직책을 2개 이상 수행 시 상위 직책 1개에 대한 장학금만 지급한다.

제17조(가족장학금) 친가족이 2명 이상 본 대학교 학부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하고 있는 경우 재학중인 학생 1명에게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200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2. 2. 1., 2019. 5. 8., 2025. 2. 18.>

1. 성적기준(수혜자 기준)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수업연한 종료학기인 경우 직전학기 8학점) 이상, 평점 2.50이상

2. 지급액 : 수업료의 35% <개정 2023. 1. 2.>

- 3. 지급기간 : 수업연한까지 <개정 2012. 2. 1.>
 - 4.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개정 2012. 2. 1.>
- <본조 전문 개정 2017. 1. 3.>

제18조 <삭제>

- 제19조(근로장학금)** ① 일정 시간의 근로를 통하여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지급액 및 범위는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며,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25. 2. 18.>
- ③ 근로학생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2018. 11. 1.>

제20조(예·체능특기장학금) 예·체능특기장학금은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나 예술경연대회에서 상위 입상한 자 및 예·체능 병역면제자격을 갖춘 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2]에 따른다. <개정 2012. 2. 1., 2017. 1. 3., 2017. 6. 21., 2018. 12. 21., 2019. 11. 25., 2023. 7. 26., 2023. 10. 13.>

- 제21조(기금장학금)** ① 각종 기부금에 의해 조성된 장학기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신설 2012. 2. 1.>
- ② 장학생의 선정기준은 기부자의 의지를 최우선하여 반영하되 별도의 요청사항이 없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이 본 대학교 「장학금 지급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장학금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기금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특성화장학금) 단과대학 및 부서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총장이 정한다. 다만,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 2. 1., 개정 2017. 1. 3., 2017. 6. 21., 2019. 11. 25., 2025. 2. 18.>

제23조(딜레이장학금) 졸업 후 기부 조건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하며 장학금 지급, 기부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2. 2. 1.>

제3장 일반대학원 장학금 <신설 2012. 2. 1.>

제24조(장학금의 종류) 본 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수재학생장학금 <신설 2015. 3. 1.>
2. CAU Graduate Research Scholarship <신설 2014. 12. 1.>
3. 중앙예술장학금
4. 중앙사랑연구장학금
5. 공로복지장학금 <개정 2018. 2. 26.>
6. 직계장학금
7. 부속기관장학금
8. 봉사장학금
9. 근로장학금 <신설 2017. 3. 24.>
10. 특성화장학금 <신설 2018. 2. 26.>
11. 기금장학금 <신설 2019. 1. 15.>
12. 외국인장학금
13. 교환학생장학금
14. 위탁성장학금 <신설 2013. 1. 1.>

<본조 전문 개정 2023. 7. 26.>

제25조 <삭제 2014. 12. 1., 2023. 7. 26.>

제26조 <삭제 2014. 12. 1., 2023. 7. 26.>

제26조의2(우수재학생장학금) 본교 재학생으로 학과 성적 및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생 선발 기준, 지급 금액, 지급 기간 등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예산 범위 내에서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5. 3. 1.>

제27조(CAU Graduate Research Scholarship) <신설 2014. 12. 1., 개정 2016. 1. 1., 2019.

1. 15.>

① 본 대학원 전일제(미취업자) 신입생 중에서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 1. 1., 2019. 1. 15.>

② CAU GRS (Graduate Research Scholarship)는 두 개의 트랙(ST, AT)으로 선발하며, AT 중 인문사회/예술계열 석사과정과 학·석사 연계과정은 A, B형으로 선발한다. 트랙별 신청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 1. 1., 2016. 9. 1., 2019. 1. 15., 2019. 5. 28.>

1. ST(Superior Track): 본 대학교 학부 신입 장학생으로서 학부 4년간 CAU리더, 과학리더, 학부 신입생모집 요강에서 정한 장학생으로서 대학원에 입학한 자

2. AT(Advanced Track): 학부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단, 박사과정의 경우 석사과정 총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3. 위 성적기준 외 연구실적물 제출자에게 총점의 20% 이내에서 가산점 부여할 수 있다(박사, 석사 공통적용).

③ 학·석사 연계과정은 석사과정 진입 시 신청 가능하다. <개정 2016. 1. 1.>

④ 석사과정의 경우, 예술계열(공연예술학과, 디자인학과, 음악학과, 조형예술학과(예술학 제외), 한국음악학과)은 CAU GRS 선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앙예술장학금 대상자에 포함한다.

⑤ <삭제 2019. 1. 15.>

⑥ ST(Superior Track) 장학생은 대학원 재학 중 평점 4.0 이상 유지 시 4학기 지급하며, AT(Advanced Track) 장학생은 대학원 재학 중 평점 3.5 이상 유지 시 4학기 동안 지급한다. 다만, 학·석사 연계 과정은 3학기, 석·박사 통합 과정의 경우 6학기 동안 지급한다.

⑦ ST(Superior Track) 장학금액은 등록금(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및 연구지원비를 지급하며, AT(Advanced Track) 장학금액은 수업료 전액(입학금 제외)을 지급한다. 다만, 인문사회/예술계열 석사과정 B형은 4학기 동안, 학·석사 연계 과정 B형은 3학기 동안 수업료의 50%를 지급한다. <개정 2016. 1. 1., 2019. 5. 28.>

⑧ ST, AT 장학생의 과정별 의무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논문제출 미이행 시 기집행된 장학금 전액을 환수한다. 다만, 글로벌박사양성사업(GPF) 수혜자는 논문제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학 중 사업 수혜를 계속 받는 기간 동안은 2020학년도부터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을 초과한 등록금액만 장학금으로 지급하며, 사업 수혜 중단 시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1., 2019. 5. 28., 2019. 11. 25.>

과정	계열	학술지 구분	의무사항
석사	인문사회/예술	등재지	A형 : 주저 1편 (또는 공저 2편) B형 : 공저 1편
	자연/의학/공학	JCR	주저 1편 (또는 공저 1편) (다만, 공저의 경우 상위 70% 이내만 인정)
학·석사 연계	인문사회	등재지	A형 : 주저 1편 (또는 공저 2편) B형 : 공저 1편
	자연/의학/공학	JCR	A형 : 주저 1편 (또는 공저 1편) (다만, 공저의 경우 상위 70% 이내만 인정) B형 : 공저 1편(또는 등재지 주저 1편)
박사 (석·박사 통합 포함)	인문사회/예술	등재지	주저 1편 + 공저 1편 (총 2편)
	자연/의학/공학	JCR	주저 1편

⑨ CAU GRS의 학술지 논문게재(게재 확정 포함)는 학위논문심사보고서 제출마감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⑩ CAU GRS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28조(중앙예술장학금) 예술계열 일반학과 석사과정 및 무용학과(실기) 석사 또는 박사 과정 전일제 신입생(학과간 협동과정 제외) 중 학과별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자에게

다음 각호와 같이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12. 1., 2018. 2. 26.>

1. 대상 : 공연예술학과, 디자인학과, 음악학과, 조형예술학과, 한국음악학과, 무용학과 (실기)(다만, 조형예술학과 석사과정 예술학은 제외) <개정 2014. 12. 1., 2018. 2. 26.>
2. 장학금액 : 수업료 전액(입학금 제외)
3. 지급기준 : 대학원 재학 중 학과별로 정한 기준 충족 시 수업연한까지 지급 <개정 2014. 12. 1., 2020. 3. 26.>
4. 장학인원 : 예술계열 연간 10명 내외 <개정 2014. 12. 1., 2018. 2. 26.>
5. 대상학과가 따로 정한 장학생 의무사항을 충족해야 졸업 가능함. <개정 2014. 12. 1.>

제29조(중앙사랑연구장학금) 소속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의 추천과 소속 부서장의 제청을 받은 자(연구조교A, 연구조교B, 교육조교, 실험조교)에게 조교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교규정과 교육·연구·실험조교임용내규에 따른다. <개정 2018. 2. 26.>

제30조(공로복지장학금) 학교·사회 발전기여자 및 가계곤란자 등에 대해 학과장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등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선발대상
 - 가. 학교 발전 기여자
 - 나. 사회 발전 기여자
 - 다. 가계곤란자
 - 라. 기타 추천을 받은 경우
2. 선발기준 <개정 2020. 3. 26.>

구 분	세부 사항		배 점
재직 기간 (30점 만점)	25년 이상		30점
	20년 이상 ~ 25년 미만		20점
	15년 이상 ~ 20년 미만		10점
성적 (30점 만점)	신입생(입학성적)	재학생(직전학기 성적)	-
	90점 이상	4.3이상	30점
	80점 이상 ~ 90점 미만	4.0 이상 ~ 4.3 미만	20점
	70점 이상 ~ 80점 미만	3.5 이상 ~ 4.0 미만	10점
	70점 미만	3.5 미만	5점
수상/연구실적물 (20점 만점)	수상 : 장관상 이상 표창(건별 10점)		20점

구 분	세부 사항	배 점
	연구실적물 : 등재지 이상 논문 발표(건별 10점)	20점
추천서* (20점 만점)	- 사회 발전 기여 활동 내역 - 대학 발전기금 납부 실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기타 특이사항 (항목별 5점)	20점

* 추천서의 추천사유 중 학교 및 사회 발전 기여정도, 가계곤란 등을 검토하여 장학위원회에서 평가함

<본조 전문 개정 2018. 2. 26.>

제31조(직계장학금)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2차 학기부터는 직전학기 성적이 3.0/4.5 이상인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 2. 26.>

1. 본 대학교 또는 법인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정년트랙 및 별정제 교원), 직원(일반사무직, 기능직), 법인 임직원의 본인 및 직계자녀 <개정 2020. 7. 24.>
2. 본 대학교 또는 법인 재직 중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전임교원(정년트랙 및 별정제 교원), 직원(일반사무직, 기능직), 법인 임직원의 본인 및 직계자녀 <개정 2020. 7. 24., 2021. 1. 21.>
3. 본 대학교 또는 법인에 15년 이상 근무하고 순직·공상으로 퇴직한 전임교원(정년트랙 및 별정제 교원), 직원(일반사무직, 기능직), 법인 임직원의 직계자녀 <개정 2020. 7. 24.>
4. <삭제 2021. 1. 21.>

② 지급액과 지급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급액: 수업료 전액(입학금 제외) <개정 2019. 1. 15., 2020. 7. 24.>
2. 지급기간 : 수업연한까지

<본조 전문 개정 2017. 6. 21.>

제32조(부속기관장학금)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산하기관(중앙대학교 제외)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자녀 중 1인에 한하여 직전학기 성적이 3.0 이상인 자에게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1. 본인 : 수업료 50%(입학금 제외)
2. 배우자 및 직계자녀 : 수업료 25%(입학금 제외)
3. 지급기간 : 수업연한까지(재직 시에 한함)
4. 제출서류
 - 가. 재직증명서
 - 나. 가족관계증명서

<본조 전문 개정 2017. 3. 24.>

제33조(봉사장학금) ① 대학원 총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에게 생활비성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 지급기준과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지급기준	지급액
총학생회장	수업료 전액
부총학생회장	
국장	
계열대표	
계열부대표	400만원
학과(전공)대표	75만원

② 당해학기 직책을 2개 이상 수행 시 상위 직책 1개에 대한 장학금만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5. 9. 9.]

제33조의2(근로장학금) ① 일정시간의 근로를 통하여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액 및 범위는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한다.

③ 근로학생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7. 3. 24.>

제33조의3(특성화장학금) 대학원 및 부서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장학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대학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 5. 28.>

1. 대학원 학과의 학생 모집 활성화, 우수대학원생 유치를 위한 장학금
2. 단순 기부가 아닌 외부기관과의 장학사업 협약에 의한 장학금
3. 기타 대학원 및 학과 특성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등록금 범위 초과 지급 가능)

<본조 신설 2018. 2. 26, 본조 목 신설 2019. 5. 28.>

제33조의4(기금장학금) ① 각종 기부금에 의해 조성된 장학기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② 장학생의 선정기준은 기부자의 의지를 최우선하여 반영하되 별도의 요청사항이 없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이 본 대학교 장학금 지급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본조 신설 2019. 1. 15.>

제34조 <삭제 2014. 6. 1., 2023. 7. 26.>

제35조 <삭제 2013. 11. 1., 2023. 7. 26.>

제36조(외국인장학금)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본 대학원에 입학한 자 및 외국인유학생에게 다음 각호와 같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1. 15.>

1. 정부초청외국인장학금 :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본 대학원에 입학한 자
 가. 정부 : 수업료 전액 및 생활비 등 지원

나. 본교 : 입학금 지원

2. 외국인장학금 <개정 2016. 1. 1., 2019. 1. 15., 2019. 5. 28., 2020. 3. 26.>

구 분	인문사회/예체능계열	자연/의,약학계열
1차 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능력(TOPIK) 6급 이상 또는 TOEFL 91(I BT)/TOEIC 780/IELTS 6.5 이상 ⇨ 수업료의 100% ▶ 한국어능력(TOPIK) 5급 이상 ⇨ 수업료의 70% ▶ 기타 : 입학성적 100점 만점으로 환산시, 80점 이상 수업료의 50% <개정 2010. 3.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금액 : 수업료의 100% ▶ 다만, 입학성적 100점 만점으로 환산시, 70점 이상인 자
2차 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여수업연한 기준 적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금액 : 수업료의 100%(다만, 평점 3.3 미만시 제외)
잔여수업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금액 - 성적(직전학기)평점 4.3 이상 : 수업료의 50% 성적(직전학기)평점 3.3 이상 ~ 4.3 미만 : 수업료의 30% 성적(직전학기)평점 3.3 미만 : 지급 제외 ▶ 이수학점 : 6학점 이상 	

3. CAYSS(Chung-Ang University Young Scientist Scholarship) <개정 2018. 12. 21.>

가. 대상 : 우수 이공계 대학원 외국인 입학생으로 중앙대학교 소속 전임교원의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13. 2. 1., 2018. 12. 21.>

나. 장학금액 : 수업료 전액(입학금 포함) 및 연구실별 생활비 지원금 (최저금액 월50만원). 다만, 연구실별 생활비 장학금은 연구실 소속 지도교수의 지급사항임.

다. 수혜요건

1) 대학원 재학 중 평균평점 3.5이상 유지 시, 4학기 지급. 다만, 석·박사통합과정 입학생은 최대 8학기까지 지급 <개정 2014. 12. 1., 2016. 9. 1.>

2) 매학기 장학금 수혜 시 지도교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4. 12. 1., 적용 2015. 3. 1.>

3) 논문 게재 시 사사문구(“이 논문은 0000(입학년도)년도 중앙대학교 CAYSS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Chung-Ang University Young Scientist Scholarship in 0000(admission year)”)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CAYSS 사사문구 포함 최대 3개까지 인정 <신설 2019. 5. 28., 개정 2021. 8. 27.>

4) 논문은 본 장학금을 포함하여 논문 제출을 의무로 하는 본 대학교의 타장학금 수혜자 및 GPF 선발자와 공동 연구 수행 시, 하나의 실적으로만 인정 <신설 2019. 5. 28.>

라. 졸업요건

1) 석사 : 졸업 전 단독 또는 지도교수와 공동으로 JCR에 논문 투고한 후, 졸업 후 1년 이내에 게재(게재 확정 포함)

2) 박사 및 석박통합 : 졸업전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JCR에 논문 1편 발표 (게재

확정 포함). 졸업 조건의 논문발표와 별개임.

마. CAYSS의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바. CAYSS 장학생이 정해진 기간 내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졸업요건을 이행할 때까지 그 지도교수는 신규 CAYSS 장학생 추천 및 논문지도를 할 수 없다.

<신설 2020. 3. 26.>

4. <삭제 2018. 12. 21.>

5. 국제화선도장학금 : 국제화선도학과로 지정된 학과의 입학생

가. 장학금액 : 수업료 전액

나. 국제화선도장학금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6. CAU International Leader Scholarship

가. 대상 : CAYSS 입학자와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중 대학본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천된 자 및 외국인 국적다변화 추진을 위해 대학원장이 추천하는 자 <개정 2018. 12. 21.>

나. 장학금액 : 생활관비(선택식비 포함) 전액 또는 일부 <개정 2023. 7. 26.>

다. 기타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7. 해외 자매대학 및 국가정부기관 추천 우수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신설 2018. 12. 21.>

가. 해외 자매 대학 교직원 장학금

1) 대상 : 해외 자매대학에 재직 또는 임용(예정) 교직원으로서 소속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장학금 지급액 :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 간의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

나. 해외국가정부기관 추천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1) 지원 자격 : 해외국가정부기관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 해당 국가정부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장학금 지급액 :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간의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

다. 성적기준 : 재학 중 평균평점 3.0 이상 유지

라. 지급기한 : 4학기 지급. 다만,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생은 최대 8학기까지 지급

제37조(교환학생장학금) “국제교류에 관한 협정” 또는 “교류협정”에 의하여 선발된 자에게 수업료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제38조(위탁생장학금) “교류 협력”에 의하여 본 대학원에 입학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3. 1. 1.>

제39조(이중 장학 허용) 교내 각종 장학금의 지급은 등록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등록금액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

1. 세계교육기행 참가 등으로 장학금을 수혜 받아 등록금을 초과한 경우
2. 교내 각종 근로 장학금을 수혜 받아 등록금을 초과한 경우
3. 우수논문 발표 등으로 장학금을 수혜 받아 등록금을 초과한 경우(중앙우수논문제, 연구성과지원 등)
4. 기타 대학원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
5. 실험조교 장학금을 수혜 받아 등록금을 초과한 경우 <신설 2018. 12. 21.>

제4장 특수대학원 장학금 <신설 2012. 2. 1.>

제40조(장학금의 종류) 본 대학교 특수대학원에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적우수장학금
2. 봉사장학금
3. 직계장학금
4. 부속기관장학금
5. 위탁생장학금
6. 외국인장학금 <개정 2017. 3. 24.>
7. 기금장학금
8. 특성화장학금 <개정 2017. 3. 24.>
9. 복지장학금 <신설 2017. 3. 24.>
10. 공개강좌장학금 <신설 2017. 3. 24.>
11. 근로장학금 <신설 2019. 5. 8.>

<본조 전문 개정 2023. 7. 26.>

제41조(성적우수장학금) ① 입학성적, 재학기간 중 성적이 우수한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세부명칭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2. 3., 2022. 5. 25.>

구분	세부명칭	지급액
신입생	입학성적우수(전체수석)	수업료 60% 이내
	입학성적우수(학과/전공수석)	수업료 40% 이내
	입학성적우수	수업료 20% 이내
재학생	성적우수(전체수석)	수업료 50% 이내
	성적우수(학과/전공수석)	수업료 30% 이내
	성적우수	수업료 20% 이내

- ③ 재학생적우수자는 직전학기 6학점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 3.5이상인 되어야 하며, 평균평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 <신설 2017. 2. 3.>
- ④ 동점자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7. 2. 3.>

구분	동점자처리기준
신입생	1. 면접전형 성적 우수자 2. 그 외 세부사항은 주관부서장이 따로 정한다.
재학생	1. 총점(취득 교과목의 취득점수 곱하기 학점수의 총합) 2. 신청과목 수 3. 그 외 세부사항은 주관부서장이 따로 정한다.

- ⑤ 장학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각 대학원별로 정한다. <신설 2023. 5. 25.>

제42조(봉사장학금) 특수대학원 원우회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2. 3.>

지급기준	지급액
원우회장	수업료 80% 이내
원우회 임원	수업료 30% 이내
원우회 학과(전공)대표	
원우회 사무국장	

제43조(직계장학금)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2차 학기부터는 직전학기 성적이 3.0/4.5 이상인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 2. 26.>

- 1. 본 대학교 또는 법인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정년트랙 및 별정제 교원), 직원(일반사무직, 기능직), 법인 임직원의 본인 및 직계자녀 <개정 2020. 7. 24.>
- 2. 본 대학교 또는 법인 재직 중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전임교원(정년트랙 및 별정제 교원), 직원(일반사무직, 기능직), 법인 임직원의 본인 및 직계자녀 <개정 2020. 7. 24., 2021. 1. 21.>
- 3. 본 대학교 또는 법인에 15년 이상 근무하고 순직·공상으로 퇴직한 전임교원(정년트랙 및 별정제 교원), 직원(일반사무직, 기능직), 법인 임직원의 직계자녀 <개정 2020. 7. 24.>
- 4. <삭제 2021. 1. 21.>

② 지급액과 지급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지급액: 수업료 전액(입학금 제외) <개정 2019. 1. 15., 2020. 7. 24.>
- 2. 지급기간 : 수업연한까지

<본조 전문 개정 2017. 6. 21.>

제44조(부속기관장학금)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산하기관(중앙대학교 제외)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자녀 중 1인에 한하여 직전학기 성적이 3.0

이상인 자에게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1. 본인 : 수업료 50%(입학금 제외)
2. 배우자 및 직계자녀 : 수업료 25%(입학금 제외)
3. 지급기간 : 수업연한까지(재직 시에 한함)
4. 제출서류
 - 가. 재직증명서
 - 나. 가족관계증명서

<본조 전문 개정 2017. 3. 24.>

제45조 <삭제 2017. 3. 24., 2023. 7. 26.>

제46조(위탁성장학금) 특수대학원에 입학하는 위탁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관부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3. 24.>

제47조 <삭제 2017. 3. 24., 2023. 7. 26.>

제48조(외국인장학금) 특수대학원에 입학하는 외국인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관부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3. 24.>

제49조(기금장학금) ① 각종 기부금에 의해 조성된 장학기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② 장학생의 선정기준은 기부자의 의지를 최우선하여 반영하되 별도의 요청사항이 없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이 본 대학교 장학금 지급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본조 전문 개정 2017. 3. 24.>

제50조(특성화장학금) ① 특수대학원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동종업계 재직자
2. 교내·외 공모전 및 학술제 참가자
3. 교류협력에 의하여 입학한 자
4. 국내·외 연수 참가자
5.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신설 2019. 5. 8.>
6. 특수대학원 특성에 따라 시행하는 프로그램 참여자 <신설 2023. 12. 1.>

② 각 호와 관련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 장학금 선발 및 지급은 [별표3]에 따라 각 대학원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본조 전문 개정 2017. 3. 24.>

제50조의2(복지장학금)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

1.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2. 장애자로서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
- ②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③ 지급액은 매년 예산범위 내에서 주관부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7. 3. 24.>

제50조의3(공개강좌장학금) 특수대학원에서 운영하는 공개강좌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적용
경력우대	1. 산업체 장기경력자 2. 신입생의 경우 서류전형 80점 이상인 자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수료 시 까지
봉사	공개강좌 원우회 임원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당해학기
문예창작	문예지 수상자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당해학기

<본조 신설 2017. 3. 24.>

제50조의4(근로장학금) ① 일정시간의 근로를 통하여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지급액 및 범위는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한다. 다만, 등록금액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③ 근로학생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9. 5. 8.>

제5장 전문대학원 장학금 <신설 2012. 2. 1.>

제51조(장학금의 종류) 본 대학교 전문대학원에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적우수장학금
2. 사회적배려계층장학금
3. 봉사장학금
4. 직계장학금
5. 부속기관장학금
6. 외국인장학금 <개정 2019. 1. 15.>
7. 해외연수장학금
8. 공로 및 특별장학금

제52조(성적우수장학금) ① 입학성적, 재학기간 중 성적이 우수한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생 선발기준, 지급금액, 지급기간 등의 세부사항은 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1. 15.>

제53조(사회적배려계층장학금)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자 중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 1. 15.>

제54조(봉사장학금) 전문대학원 원우회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 및 기타 관련된 활동에 기여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1. 15.>

제55조(직계장학금)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2차 학기부터는 직전학기 성적이 3.0/4.5 이상인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 2. 26., 2021. 9. 16.>

1. 본 대학교 또는 법인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정년트랙 및 별정제 교원), 직원(일반사무직, 기능직), 법인 임직원의 본인 및 직계자녀 <개정 2020. 7. 24.>

2. 본 대학교 또는 법인 재직 중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전임교원(정년트랙 및 별정제 교원), 직원(일반사무직, 기능직), 법인 임직원의 본인 및 직계자녀 <개정 2020. 7. 24., 2021. 1. 21.>

3. 본 대학교 또는 법인에 15년 이상 근무하고 순직·공상으로 퇴직한 전임교원(정년트랙 및 별정제 교원), 직원(일반사무직, 기능직), 법인 임직원의 직계자녀 <개정 2020. 7. 24.>

4. <삭제 2021. 1. 21.>

② 지급액과 지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액: 수업료 전액(입학금 제외) <개정 2019. 1. 15., 2020. 7. 24.>

2. 지급기간 : 수업연한까지

<본조 전문 개정 2017. 6. 21.>

제56조(부속기관장학금)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산하기관(중앙대학교 제외)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자녀 중 1인에 한하여 직전학기 성적이 3.0 이상인 자에게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1. 본인 : 수업료 50%(입학금 제외)

2. 배우자 및 직계자녀 : 수업료 25%(입학금 제외)

3. 지급기간 : 수업연한까지(재직 시에 한함)

4. 제출서류

가. 재직증명서

나. 가족관계증명서

<본조 전문 개정 2017. 3. 24.>

제57조(외국인장학금) 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외국인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1. 15.>

제58조(해외연수장학금) 전문대학원 재학자 중 인턴십·교환학생 등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자에게 왕복항공료 범위 내에서 일정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1. 15.>

제59조(공로 및 특별장학금) 전문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중 본 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1. 15.>

제6장 보칙 <신설 2023. 7. 26.>

제60조(기타) ① 본 시행세칙에 정하지 않은 장학에 관한 사항은 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9. 1., 2019. 1. 15.>

② 장학금 책정단위는 천원단위에서 반올림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2. 9. 1.>

③ 신·편입학생(신·편입학 최초 학기 휴학 후 복학생 포함)의 경우 해당 장학금의 성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12. 1.>

④ 교환학생 등으로 직전 학기 평점이 산출되지 않는 학생은 평점이 산출된 최종 학기 성적을 적용한다. 단, 각 장학금에서 따로 정한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3. 12. 1.>

부 칙

①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1971학년도 제2학기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1974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③ (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1976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④ (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1976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⑤ (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1981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⑥ (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1982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⑦ (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1985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⑧ (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1986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⑨ (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1988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⑩ (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1992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⑪ (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1993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⑫ (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1994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 ⑬ (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1999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 ⑭ (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2001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 ⑮ (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2002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 ⑯ (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2006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 ⑰ (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2008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 다만, 제 18조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시행세칙은 2010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 2. 1.>

제1조 (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개정 시행세칙중 이 세칙과 상이하여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세칙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종전 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2. 8. 1.>

본 시행세칙은 2012년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 9. 1.>

제1조 (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개정 시행세칙 제4조는 201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졸업시까지 변경 전 시행세칙에 따른다.
 ② 이 개정 시행세칙 제12조 제1항, 제2항은 201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적용례) 이 시행세칙 중 제4조(입학성적우수장학금) 별표1은 2013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 12. 1.>

- ①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개정 시행세칙 제13조는 201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3. 1. 1.>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 2. 1.>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 5. 1.>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 12. 2.>

제1조 (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개정 시행세칙 제4조는 2014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졸업까지 변경 전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3조 (적용례) 이 시행세칙 중 제4조(입학성적우수장학금) 별표1은 2014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제4조 (기타) 각 항과 호 체계를 규정관리 규정에 맞게 일괄 수정한다.

부 칙 <개정 2014. 6. 1.>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 12. 1.>

제1조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개정 시행세칙 제12조(외국인장학금) 제1항, 제2항은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 시행세칙 제14조(국가시험지원장학금)는 2015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6. 1. 1.>

제1조 (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개정 시행세칙 제14조(국가시험지원장학금) 제3항, 제5항은 2016년도 합격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5년도 합격생까지는 변경 전 시행세칙에 따른다.

② 이 개정 시행세칙 제26조의 2(우수재학생장학금)는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③ 이 개정 시행세칙 제36조(외국인유학생장학금)는 2015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6. 8. 1.>

제1조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개정 시행세칙 제27조(CAU Graduate Research Scholarship)는 2016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개정 시행세칙 제36조(외국인유학생장학금)는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7. 1. 3.>

제1조 (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의 시행으로 종전의 각 계열별 장학내규는 폐지한다.

부 칙 <개정 2017. 2. 3.>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 3. 24.>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 6. 21.>

제1조 (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7학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부터 적용하여 시행한 것으로 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제31조(직계장학금)는 배우자의 경우 2019.2.28 까지 한시 적용하며, 제43조(직계장학금) 및 제55조(직계장학금)는 배우자 및 직계자녀의 경우 2019.2.28 까지 한시 적용한다.

② 2017.1.3. 개정 시행세칙 제9조(부속기관장학금), 제32조(부속기관장학금), 제44조(부속기관장학금), 제56조(부속기관장학금)의 지급액은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까지는 변경 전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 칙 <개정 2018. 2. 26.>

제1조 (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7학년도 2학기 장학생 선발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외국인장학금)는 2018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개정 시행세칙에 따라 제28조(중앙예술장학금), 제29조(중앙사랑연구장학금), 제30조(공로복지장학금)의 장학생 선발은 2017학년도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8. 12. 21.>

제1조 (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9학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개정 시행세칙에 따라 제39조(이중 장학 허용)의 장학생 선발은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9. 1. 15.>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9학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 5. 8.>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9학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 5. 28.>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9학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다만, 제27조(CAU GRS)는 2019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제36조(외국인장학금)는 2020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 11. 25.>

제1조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7조(CAU GRS) 제⑧항 개정 내용 중 ‘다만 글로벌박사양성사업(GPF) 수혜자는 논문제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는 2015학년도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20. 3. 26.>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20학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외국인장학금) 3호(CAYSS) 신설 ‘바’ 목은 2020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0. 7. 24.>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본 시행세칙의 개정사항은 2020학년도 2학기 장학생 선발부터 적용한다.

② 본 개정 시행세칙 중 제7조(직계장학금), 제31조(직계장학금), 제43조(직계장학금), 제55조(직계장학금)는 2021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3조(직계장학금) 및 제55조(직계장학금)의 직계자녀 지급액 기준은 2020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0. 8. 27.>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일부개정) 본 시행세칙 2020년 7월 24일자 부칙 중 제2조(적용례) 제2항의 단서를 “다만, 제43조(직계장학금) 및 제55조(직계장학금)의 직계자녀 지급액 기준은 2020학년도 2학기 장학생 선발부터 적용한다.” 로 개정 한다.

부 칙 <개정 2020. 10. 7.>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본 개정 시행세칙 중 제3조(성적우수장학금) 및 제12조(외국인장학금) 제1항의 단서 “천재지변 또는 사회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장학금 관련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는 2020학년도 2학기 장학생 선발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21. 1. 21.>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본 시행세칙의 개정사항은 2021학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1. 5. 17.>

이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1. 8. 9.>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본 시행세칙의 개정사항은 2022학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1. 8. 27.>

이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1. 9. 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개정 시행세칙 중 제16조(봉사장학금) 제2호 [별표1] 봉사장학금 배정인원 및 지급금액 현황의 중대신문사, 중앙헤럴드, 교육방송국 관련 조문 삭제는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 것으로 하고, 제55조(직계장학금) 제1항의 의학전문대학원 관련 조문 삭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 시행세칙 중 제12조(외국인장학금) 제1항 제1호는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2. 5. 25.>

이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3. 1. 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개정 시행세칙 중 제7조(직계장학금), 제9조(부속기관장학금), 제13조(우수선수장학금), 제17조(가족장학금)의 개정 사항은 2023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 시행세칙 중 [별표1] 봉사장학금 배정인원 및 지급금액 현황의 개정사항은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3. 5. 9.>

이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3. 7. 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 시행세칙 중 [별표1] 학사과정 봉사장학금 지급기준, [별표2] 학사과정 예·체능특기장학금 지급기준의 개정사항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한다.

부 칙 <개정 2023. 10. 13.>

이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3. 12. 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 시행세칙 중 제7조(직계장학금) 및 제12조(외국인장학금)의 개정사항은 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5. 2. 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개정 시행세칙 중 제3조제1항·제4항제2호, 제16조, [별표1]은 2025학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부터, 제3조의2는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 시행세칙 중 제3조제4항제4호의 개정사항은 2025학년도 2학기 장학생 선발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5. 9. 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 시행세칙 중 제33조(봉사장학금)의 개정사항은 2025학년도 2학기 장학생 선발부터 적용한다.

[별표1] 학사과정 봉사장학금 지급기준 <개정 2018. 12. 21., 2021. 9. 16., 2023. 1. 2., 2023. 5. 9., 2023. 7. 26., 2025. 2. 18.>

구분	직책	인원(명)		장학금액	비고
		서울	다빈치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1	1	수업료 전액	
	부총학생회장	1	1	수업료 전액	
	국장	8	12	수업료의 65%	
	국원	8	10	400,000원	
단과대학	학생회장	각1	각1	수업료의 65%	
	부학생회장	각1	각1	수업료의 35%	
	부장	각5~10	각5~10	400,000원	<재학인원에 따라 차등 선발> 1,000명 미만 5명 1,000명 이상 ~ 2,000명 미만 7명 2,000명 이상 10명
	학과(부, 전공, 분반) 회장	각1	각1	1,000,000원	분반은 단일학부로 운영되는 공과, 창의 ICT공과, 소프트웨어, 경영경제, 약학, 적십자간호대학으로 한정함.
	학과(부, 전공, 분반) 부회장	각1	각1	600,000원	
	학과(부, 전공, 분반) 학년대표	각1	각1	400,000원	
동아리연합회	동아리연합회장	1	1	수업료의 65%	
	동아리연합부회장	1	1	수업료의 35%	
	동아리분과장	13	13	550,000원	
	국장	5	5	400,000원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	1	1	수업료의 65%	
	부위원장	1	1	수업료의 35%	
	국장	5	6	400,000원	
문화위원회	위원장	1	1	수업료의 65%	
	부위원장	1	1	수업료의 35%	
	국장	5	5	400,000원	
졸업준비위원회	위원장	1	1	수업료의 65%	
	부위원장	1	1	수업료의 35%	
	국장	5	1	400,000원	
학생인권위원회/ 인권평등위원회	위원장	1	1	수업료의 65%	서울캠퍼스 : 학생인권위원회 다빈치캠퍼스 : 인권평등위원회
	부위원장	1	1	수업료의 35%	
	국장	5	5	400,000원	
R.O.T.C	자치위원장	1	1	수업료의 35%	
	자치부위원장	10	10	500,000원	
응원단	응원단장	1		수업료의 65%	
	응원부단장	2		수업료의 35%	
	응원단원	12		500,000원	
동아리	사회봉사우수동아리	상시		450,000원	
총인원		77	80	단과대학 학생회 및 서울, 다빈치 공용인원 제외	

[별표2] 학사과정 예·체능특기장학금 지급기준 <개정 2018. 12. 21., 2019. 11. 25., 2023. 7. 26., 2023. 10. 13.>

■ 예술대학

1. 대회/공모전 별 수상 기준표

1위	2위	3위
전체 대상 전체 최우수상 전체 금상 등단(신인상) 선정(최종 선정) 장원 Winner(s) Award(s) Best of best 그랑프리 대통령상 국회의장상 국무총리상 기타 위와 동등한 수상	부문 최우수상 부문 금상 부문 은상 부문 2위 이상 우수상(2위에 준함) 선정(2차 선정) 차상 골드 기타 위와 동등한 수상	부문 동상 부문 3위 이상 우수상(3위에 준함) 선정(1차 선정) 차하 실버 본선 진출(단, 연극, 영화, 공간연출 전공에 한함) 기타 위와 동등한 수상

2. 대회/공모전 별 등급 구분표

등급	대회/공모전 시상 및 주최(주관)
A급	■ 각 학부 및 전공 별 A급 대회/공모전 기준표 기준
B급	■ 각 학부 및 전공 관련 국제 및 전국대회 중 다음 기관에서 주최(주관)한 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원, 지방경찰청, 지방자치단체(도·시·군), 대학(4년제) - 대기업 - 지방언론사 - 공기업, 중견기업, 재단법인, 사단법인, 민간 전문단체(1위 수상자에 한하여 B급 3위 장학금액 기준으로 지급) ▶ 기업 구분 기준(해당 여부는 대학에서 별도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10조원 미만 또는 3년 평균매출액 1,500억원 이상(3년 평균매출액은 업종별 차등 적용)

3. 장학금액(원)

등급	1위	2위	3위
A급	1,000,000	700,000	500,000
B급	700,000	500,000	200,000

※ 영화, 공간연출 전공 메인 수상자 이외 서브, 보조역할 수상자의 경우 상기 금액의 50%를 장학금액으로 지급한다.

※ 한 작품에 하나의 대회 수상만 인정하며, 타 대회 수상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 단체상일 경우 대표자 1인에게 지급한다.

4. 각 학부 및 전공 별 A급 대회/공모전 기준표

학부	전공	대회/공모전 명칭(주최)
공연영상 창작학부 (서울)	연극	Asia Theatre Education Center(ATEC), KBS가요대축제, KBS연기대상, KBS연예대상, MBC가요대제전, MBC연기대상, MBC연예대상, SBS가요대제전, SBS연기대상, SBS연예대상, World Theatre Education Alliance(WTEA), 거창국제연극제, 김천국제가족연극제,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대중상영화제, 대한민국연극대상, 대한민국연극제, 동아연극상, 밀양공연예술축제, 백상예술대상, 베이징국제청년연극제, 부산국제연극제, 서울연극제, 이해랑연극상, 젊은연극제, 청룡영화상, 포항바다국제연극제, 한국뮤지컬어워즈
	영화	대중상영화제, 디렉터스컷어워즈, 미장센단편영화제, 백상예술대상, 부산국제영화제,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청룡영화상, 춘사국제영화제,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해외국제영화제(칸, 브리셀 등)
	공간연출	Asia Theatre Education Center(ATEC),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cenographers(OISTAT), Prague Quadrennial(PQ), World Stage Design(WSD), World Theatre Education Alliance(WTEA), 거창국제연극제,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대중상영화제, 대한민국연극대상, 대한민국연극제, 동아연극상, 디렉터스컷어워즈, 미장센단편영화제, 밀양공연예술축제, 백상예술대상, 베이징국제청년연극제, 부산국제연극제, 부산국제영화제,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서울국제실험영화페스티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 서울연극제,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이해랑연극상, 전주국제영화제, 청룡영화상, 춘사국제영화제, 포항바다국제연극제, 한국뮤지컬어워즈,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해외국제영화제(칸, 브리셀 등)
공연영상 창작학부 (다빈치)	문예창작	극본 공모전(KBS, MBC, SBS, CJ E&M, JTBC 등), 대산대학문학상, 대한민국스토리공모대상, 문예지(창작과비평, 문학과사회, 문학동네, 문학사상, 실천문학, 현대문학, 아시아, 내일을여는작가, 시작, 파란 등), 문학동네소설상, 신춘문예(경향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국경제신문 등), 심훈문학상, 아동문학상(창비어린이, 어린이와문학, 동시마중, 청소년문학 등)
	사진	BELT PROJECT, Dior Photography Award for Young Talents, 미래작가상, 사진비평상, 송은미술대상, 일우사진상
	무용	대한민국무용대상, 동아무용콩쿠르,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 탄츠올림프베를린
미술학부	한국화 서양화 조소	금호영아티스트, 김종영미술관 창작지원작가전, 대교국제조형심포지엄, 대한민국미술대전,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 송은미술대상전, 아시아프, 아트부산, 중앙회화대전, 한국구상조각회,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한국미술국제대전, 한국창작문화예술대전, 화랑미술제

디자인 학부	공예	경기도공예품대전,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대한민국 텍스타일 디자인대전,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익산한국공예대전, 청주공예비엔날레, 한국 옷칠공예대전, 한영텍스타일디자인공모전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Adobe Design Achievement Awards, Interior Motives(Car Design News), 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s(IDEA), International Forum Design Award(iF), Jaguar Car Design Award, Red Dot Design Award, Spark Design Awards, 굿 디자인 어워드, 대한민국광고대상,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부산국제디자인어워드, 핀업컨셉디자인어워드, 한국미술국제대전
	실내환경 디자인	건축친환경설비기술공모전, 공간디자인대전, 국제청소년디자인전, 대한민국건축대전, 서울디자인어워드, 한국색채대상,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주제 공모전
	패션	3D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경진대회, K-패션 오디션(대한민국패션대전), MDF 패션디자인 공모전, 국제 디지털 패션 콘테스트,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대한민국 전통의상 공모대전,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부산텍스타일디자인대전, 중앙패션디자인컨테스트, 코리아 텍스타일 디자인 어워드, 패션상품기획콘테스트, 한국국제패션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 한복디자인 프로젝트 공모전, 한지무대의상전
음악학부	작곡 성악 피아노 관현악	KBS한전음악콩쿠르, 광주성악콩쿠르, 국제 박영희 작곡상, 난파전국음악콩쿠르, 대구 국제 성악콩쿠르, 동아음악콩쿠르, 부산음악콩쿠르,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서울음악제, 성정음악콩쿠르, 세일 한국가곡 콩쿠르,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제주국제관악제, 중앙음악콩쿠르, 한국성악콩쿠르, 해외가곡콩쿠르, 화천비목콩쿠르
전통 예술학부	음악예술 연희예술	KBS국악대경연,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동아연극상, 동아음악콩쿠르, 신라문화제, 온나라 국악경연대회, 전국 국악(전통예술) 경연 대회, 전주대사습놀이
글로벌 예술학부	TV방송연예	Asia Theatre Education Center(ATEC), KBS가요대축제, KBS연기대상, KBS연예대상, MBC가요대제전, MBC연기대상, MBC연예대상, SBS가요대전, SBS연기대상, SBS연예대상, World Theatre Education Alliance(WTEA), 거창국제연극제, 김천국제가족연극제,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대중상영화제, 대한민국연극대상, 대한민국연극제, 동아연극상, 디렉터스컷어워즈, 미장센단편영화제, 밀양공연예술축제, 백상예술대상, 베이징국제청년연극제, 부산국제연극제, 부산국제영화제,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서울국제실험영화페스티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 서울연극제,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이해랑연극상, 전주국제영화제, 젊은연극제, 청룡영화상, 춘사국제영화제, 포항바다국제연극제, 한국뮤지컬어워즈,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해외국제영화제(칸, 브뤼셀 등)
	실용음악	대학가요제,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주요 언론사 주최 대회(KBS, MBC, SBS)
	게임콘텐츠· 애니메이션	BIC Festival, BIGS AWARDS, GIGDC, MWU KOREA AWARDS, 구글 인디게임 페스티벌,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서울 인디애니페스트, 인디 크래프트

※ 상기 명칭은 대회/공모전 상황에 따라 비엔날레, 아트페어, 콘테스트, 대전 등의 기타 명칭으로 변경되어 개최될 수 있음.

■ 체육대학 및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구분	장학금액(원)	
국가대표선발(올림픽종목)	1,000,000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및 산하단체(연맹) 주최 국내·외 대회	1위	1,000,000
	2위	700,000
	3위	500,000

※ 장학금은 개인전 참가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단, 테니스, 배드민턴, 스쿼시 종목의 경우 복식경기 참가자에게도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별표3] 특수대학원 특성화장학금 지급기준 <개정 2019. 5. 8., 2020. 7. 24., 2021. 5. 17., 2022. 5. 25., 2023. 7. 26. 2023. 12. 1.>

1. 동종업계 재직자

- 가. 선발기준 : 각 대학원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선발기준. 단, 교육대학원은 라목의 선발 기준에 의함
- 나. 지급액 :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 다.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및 각 대학원 장학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서류
- 라. 교육대학원 선발기준

구분		배점기준				
		15점	20점	25점	30점	
재직년수 (30점 만점)		2년 미만	2~3년 미만	3~5년 미만	5년 이상	
성적 (25점 만점)	재학생 (평점)	/	3.5~3.99	4.0 이상	/	
	신입생 (총점)		200점 만점 기준	140점~179점		180점 이상
			300점 만점 기준	210점~269점		270점 이상
추천서 및 자기계발서(학업계획서) (45점 만점)		장학위원회에서 평가				
제출서류		재학생 : 재직증명서, 추천서 및 자기계발서 신입생 : 재직증명서, 학업계획서				

※ 100점 만점 중 70점 미만은 탈락

2. 교내·외 공모전 및 학술제 참가자

- 가. 지급기준
 - 1) 교내·외 공모전 및 학술제 제작, 공연, 기획(작품, 공연, 디자인, 그림 기타) 및 참가자
 - 2) 내용, 구성, 디자인 등 평가 우수자
- 나. 성적기준
 - 1)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3.5 이상인 자
 - 2) 신입생 : 입학성적 총점 150점 이상인 자
- 다. 지급 금액 :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 라. 제출서류
 - 1) 학술제 주관관련 공문

2) 학과장 혹은 전공주임교수 추천서

3. **교류협력(MOU)에 의하여 입학한 자** : 선발 및 지급에 관련된 사항은 협약 내용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접적 업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4. 국내·외 연수 참가자

가. 지급기준 : 각 특수대학원에서 주관하는 국내·외 연수에 참가하는 재학생

나.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3.5 이상인 자(신입생의 경우 성적기준 제한 없음)

다. 지급금액

1) 장학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정한다.

2) 국내·외 연수 참가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업료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 제출서류 : 연수참가신청서

5.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가. 지급기준 : 각 특수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나. 지급금액 : 장학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정한다.

다. 제출서류 : 공적조서 또는 추천서

6. **특수대학원 특성에 따라 시행하는 프로그램 참여자**: 장학대상자 선발 및 지급에 관련된 사항은 각 특수대학원 특성에 따라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특수대학원 장학위원회에서 정한다.